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21 · 8 · 3 조례 제17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이천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